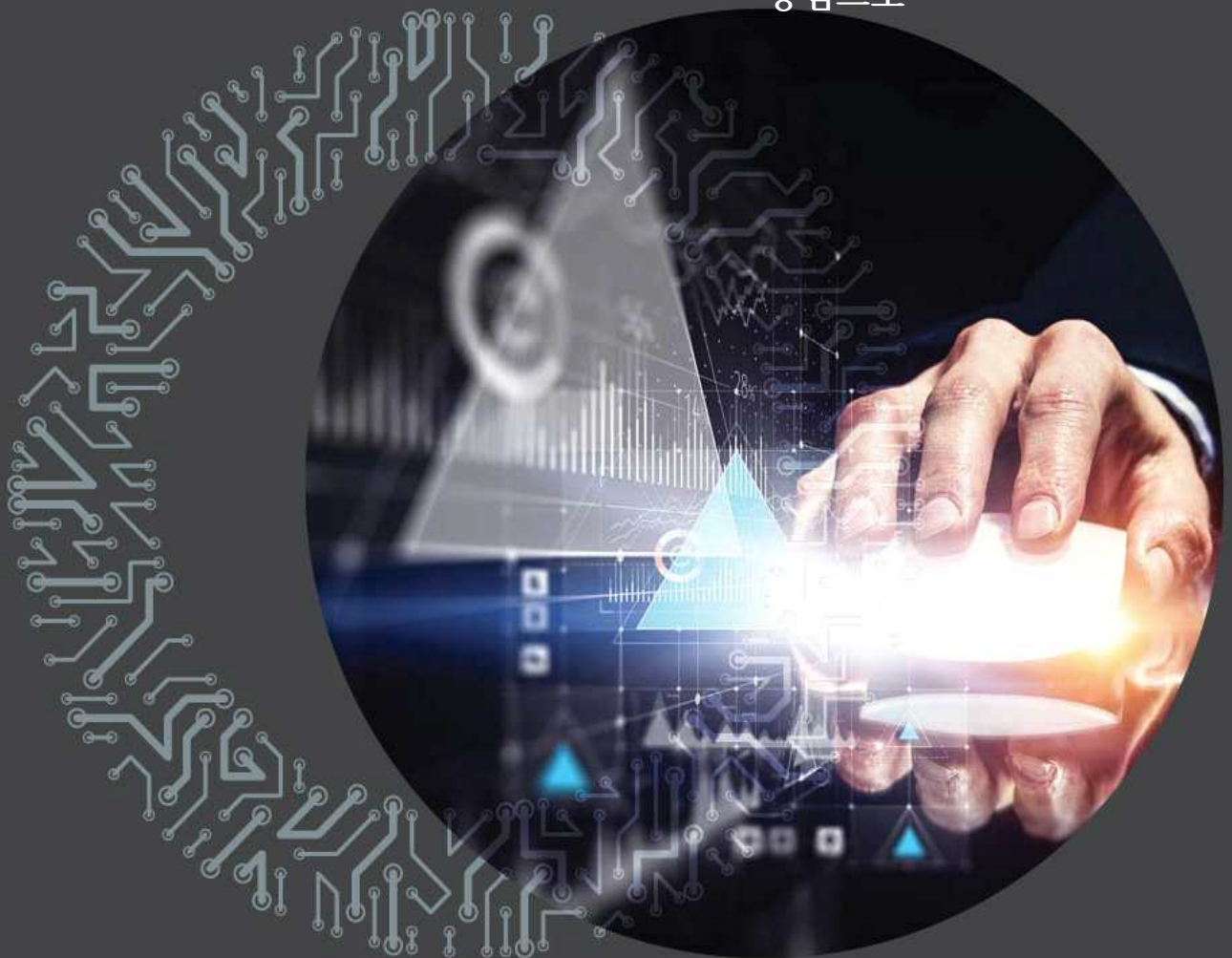


Insight Report

국제통상 신규 통신규범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PP 통신 협정문
중심으로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
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 약	1
	I. 분석 개요	3
	II. 대상국 통신시장 현황 조사	5
	III. 신규 규범별 영향 분석	11
	IV. 결론 및 시사점	4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 분석 개요

- (필요성) 진행 중인 국제통상협상 내 통신 규범 협상이 기 체결 FTA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사전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목적) 예상되는 신규 통신 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및 기타 사업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검토
- (검토 방법) ① 진출·진입 대상 통신시장 현황 조사 ②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③ 시장 진입·진출 시나리오를 통한 시장 접근 시 제약 현황 검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 규범별 영향 분석
- (대상 규범) TPP 통신 규범을 기준으로 통신규제기관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 중 주요 7개 규범 선정

■ 신규 규범 영향 검토 분석 요약

- 재판매 및 전용회선
 - (국내 시장) 신규규범 적용 대상 국내 시장의 경쟁 수준이 충분히 높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해외 사업자 진입 가능성을 포함)이 높지 않음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의 경우 신규규범 수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제도가 충분치 않고 시장 매력도 역시 일부 확인되어 진출 시 신규규범에 따른 혜택 기대
- 필수설비 접근 및 망요소 세분화
 - (국내 시장) 해외 사업자의 국내 사업자 필수설비 및 가입자선로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영향(해외 사업자 진입 가능성 포함) 미미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의 경우 진출 시 필수설비 이용 가능성은 낮으나 신규 규범에 따른 가입자선로 사용 기회 확대에 따른 혜택 기대

● 번호이동성

- (국내 시장) 특정유형(VoIP→PSTN)의 번호이동 요청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그 외 번호이동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신규규범에 의한 영향 미미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 진출 시 이동전화 번호이동 보장으로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가능성 증가 기대

● 이의신청 및 규제 접근

- (국내 시장) 이의신청은 국내에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규제면제는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영향 높지 않음
- (해외 진출) 일부 시장(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규제면제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영향 미미

■ 시사점

- 신규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규 통신규범이 중국, 인도, ASEAN 3국을 포함한 진행 협상 참여 예상국의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유도,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제약 조건 해소 기대
 - 재판매, 전용회선, 가입자선로 규범 등은 해외 시장에 통신망 구축 없이 통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예: 클라우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규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제통상규범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통신규범이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향후 진행·예상되는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필요

I 검토 개요

■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필요성) 진행 중인 국제통상협상 내 통신 규범 협상이 기 체결 FTA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사전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진행 협상('16.12월 기준):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한중일 FTA, 한-이스라엘 FTA 등

- (목적) 예상되는 신규 통신 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및 기타 사업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 진행 중인 통상협상 내 신규 규범에 관한 정보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 현재 공개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통신 규범 기준으로 검토

- (수출 효과 분석) 국내 통신사업자가 협상 참여 예상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 신규 규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 분석

* 대상국: 진행 협상 참여가 확인·예상되는 주요 9개국 선정(EU(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 FTA 체결국)

- (수입 효과 분석) 협상 참여 예상국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시장에 진입할 경우 신규 규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 분석

* 대상국: 진행 협상 참여가 확인·예상되는 국가 중 진입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의 국내 진입 시나리오를 중점 검토하기 위해 주요 4개국 선정(EU(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 분석 방법 및 연구 대상 규범

- (검토 방법) ① 진출/진입 대상 통신시장 현황 조사 ② 기 체결 FTA 규범 비교, ③ 시장 진입·진출 시나리오를 통한 시장 접근 시 제약 현황 검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 규범별 영향 분석

- (시장 현황 조사) 대상국 통신시장의 서비스 보급률, 시장 성숙도, 사업자간 경쟁수준을 조사하여 대상국의 통신시장 매력도 검토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대상국과의 기 체결 FTA 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 통신 규범의 추가적 영향력 분석
- (시장 진입 제약 수준) 국내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 진출 시나리오에 의한 시장 접근 시 제약 현황 및 실제 통신사업자 진입/진출 현황 조사
- (대상 규범) TPP 통신 규범을 기준으로 통신규제기관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 중 주요 7개 규범 선정
 - (① 재판매: TPP 13.9조) 지배적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 재판매 의무 부과
 - (②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책정: TPP 13.12조) 지배적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과
 - (③ 필수설비 접근: TPP 13.14조) 지배적 사업자의 전주·관로·도관 및 설비포설권 접근 및 이용 보장
 - (④ 망요소 세분화: TPP 13.10조) 지배적 사업자의 세분화된 망요소 접근 보장
 - (⑤ 번호이동성: TPP 13.5.4항) 통신서비스의 번호이동 보장
 - (⑥ 분쟁해결 내 이의신청: TPP 13.21조) 통신규제기관에 이의신청 보장
 - (⑦ 규제접근: TPP 13.3조) 통신규제기관의 규제이행방식 선택권 인정 및 규제 적용 면제 허용 가능

II 대상국 통신시장 현황 조사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9개 대상국 주요 통신서비스(유선, 이동, 브로드밴드) 보급률 (penetration rate), 시장 성장 현황(maturity), 주요 사업자 현황 (competitiveness) 조사를 통한 대상국 통신시장 매력도 검토
- (대상 서비스) 통신 규범에 포함된 세분화된 통신시장 조사가 어려움을 감안, 유선통신(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이동통신(2G, 3G, 4G 등), 브로드밴드(FTTH) 등 3개 통신서비스로 대분류

통신서비스 보급률 현황

- (시장 매력도와와의 관계) 통신서비스 보급률이 높을수록 통신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시장 매력도가 낮다고 해석 가능
 - *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기존 통신서비스 대체(예: 3G → 4G 대체) 등에 따라 서비스 보급률과 시장 매력도간 인과관계에 있어 불명확성 존재

<표 1> 9개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서비스 보급률 현황

구 분	유선통신 가입회선		이동통신 가입자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회선수(천)	보급률	가입자수(천)	보급률	회선수(천)	보급률
한국	29,481	59.5%	57,208	115.5%	19,199	38.8%
미국	129,417	40.1%	317,443	98.4%	97,981	30.4%
영국	33,238	52.4%	78,461	123.6%	23,730	37.4%
프랑스	38,805	60.0%	64,875	100.4%	25,970	40.2%
일본	63,610	50.1%	152,695	120.2%	37,224	29.3%
중국	249,430	17.9%	1,286,093	92.3%	200,483	14.4%
인도	27,000	2.1%	944,008	74.5%	15,746	1.2%
베트남	5,562	6.0%	136,148	147.1%	6,000	6.5%
인도네시아	29,637	11.7%	319,000	126.2%	3,009	1.2%
말레이시아	4,410	14.6%	44,928	148.8%	3,061	10.1%

(출처 : NIPA, '14.12월 기준,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보급률 현황 결과 요약

- (유선통신) 한국을 포함, 미국, EU(영국, 프랑스), 일본은 서비스 보급률 40%를 상회한 반면 중국, 인도, ASEAN 3국 서비스 보급률은 20% 미만

- (이동통신) 인도(74.5%)를 제외하고 서비스 보급률이 90%를 상회하며, 한국을 포함 일본, EU(영국, 프랑스), ASEAN 3국은 서비스 보급률 100% 초과
- (브로드밴드) 한국, 미국, EU(영국, 프랑스), 일본의 서비스 보급률은 최소 약 30% 수준인 반면, 중국, 인도, ASEAN 3국의 서비스 보급률은 15% 미만

☐ 통신서비스 시장 성장 추이

● (시장 매력도와와의 관계) 통신서비스 시장 성장 추이가 정체/하락할수록 시장 성숙/쇠퇴 단계로 간주할 수 있어 시장 매력도가 낮다고 해석 가능

* 다만, 시장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대체 현상, 정부의 정책 지원 여부 등에 따라 해당 통신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가능

●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시장 성장 추이 결과 요약

- (유선통신) 모든 국가에서 유무선 대체 등으로 인한 유선통신 가입자수(또는 회선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시장 축소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동통신) LTE 서비스 도입 및 확산 본격화, 후발 사업자(MVNO 포함) 진입을 통한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이동통신 시장 성장 예상
 - (브로드밴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브로드밴드 지원 정책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브로드밴드 시장 성장 예상
- * 상대적으로 서비스 보급률이 높은 국가(한국, 미국, EU, 일본)일수록 완만한 성장 예상

<표 2> 9개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시장 성장 추이 현황

구 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한국	가입자수 지속 감소 (‘13.12월 1,762만 → ‘16.10월 1,583만, 시내전화 기준)	가입자수 점진 증가 (‘14.12월 5,729만 → ‘16.10월 6,105만, 이동전화 기준)	가입자수 점진 증가 (‘13.12월 1,874만 → ‘16.10월 2,048만, 초고속인터넷 기준)
미국	유무선 대체 현상으로 가입회선 수 지속 감소 (‘12년 43.7% → ‘14년 40.1%)	주요 사업자들의 LTE 전국망 완료 후 모바일 인터넷 속도 경쟁을 통한 LTE 전환 본격화 예상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사업자 투자 확대에 따른 점진적 성장 전망
영국	기존 PSTN 서비스에서 VoIP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 본격화	주요 사업자들의 LTE 서비스 경쟁 본격화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예상	‘10-‘14년 연간 5.5% 수준 (‘10년 30.9% → ‘14년 37.4%) 정부 브로드밴드 전략에 따라 지속 확대 전망
프랑스	유무선 대체 및 VoIP 서비스로의 대체 전망	LTE로의 전환 본격화(유럽 4G 시장 성장 주도 전망)	‘12년 대비 4.1% 증가 (‘12년 37.5% → ‘14년 40.2%)

구 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12년 62.1% → ‘14년 60.0%)	MVNO 사업자들의 점유율 증가 전망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로 지속 성장 전망
일본	유무선 대체에 따른 감소 지속 (‘10년 51.5% → ‘14년 50.1%) VoIP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적용을 통한 기존 유선시장 감소 및 VoIP 시장 성장 전망	LTE로의 전환 진행 MVNO 시장(19.9%) 성장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전체 성장 기대	‘10년 대비 2.5% 증가 (‘10년 26.8% → ‘14년 29.3%)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사업자 지속 투자로 점진적 성장세 전망
중국	이동통신 및 VoIP 확산으로 시장 감소 지속 (‘10년 22.0% → ‘14년 17.9%) B2B 대상 통신 서비스 특화 추진 전망	3G 시장 확대 및 LTE 출시에 따른 시장 성장 전망 (MVNO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	‘10년 대비 6.2% 증가 (‘10년 9.4% → ‘14년 15.6%) 정부의 브로드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속 성장 전망 (민간 자본의 브로드밴드 진출 허가)
인도	유무선 대체에 따른 감소 지속 (‘10년 2.9% → ‘14년 2.1%)	LTE 서비스 개시로 비도심 지역 중심의 시장 성장 본격화 전망 (‘12년 69.9% → ‘14년 74.5%)	전국적 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 추이 정체 (‘10년 0.9% → ‘14년 1.2%) 국가 브로드밴드 추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 전망
베트남	유무선 대체에 따른 감소 지속 (‘12년 10.5% → ‘14년 6.0%)	성장세 둔화로 3G 서비스로의 가입자 전환 주력 및 LTE 개시 추진	‘12년 대비 1.4% 증가 (‘12년 5.3% → ‘14년 6.7%)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요 증가로 성장세 둔화 예상
인도네시아	‘12년 대비 회선수 23.2% 감소 (‘12년 3,862만 → ‘14년 2,964만) 정부 활성화 정책에 따라 CDMA 기반 고정형 무선 서비스 및 VoIP 증가 전망	후발사업자(Smart Telecom, Bakrie Telecom)와 3개 주요 사업자간 경쟁 본격화 예상	‘12년 대비 회선수 40.8% 증가 (‘12년 450만 → ‘14년 634만)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투자 증가로 시장 성장 전망
말레이시아	유무선 대체에 따른 감소 지속 (‘10년 16.3% → ‘14년 14.6%)	LTE 서비스 개시 및 무선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시장 지속 성장 전망	‘12년 대비 0.9% 증가 (‘12년 20.3% → ‘14년 21.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사업자 투자 확대에 지속 성장 전망

(출처 : NIPA, ‘14.12월 기준, 단, 한국의 경우 미래부 통계에 따라 ‘16.10월 가입자수 현황 참조)

☐ 통신서비스 주요 사업자 현황

● (시장 매력도와외의 관계) 지배적 사업자 없이 다수 통신사업자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일수록 시장 경쟁도가 높아 시장 매력도가 낮다고 해석 가능

* 다만, 지배적 사업자 독점 구조의 시장이더라도 시장 진입 제약이 높을 경우 시장 매력도가 최종적으로 낮게 평가 가능

<표 3> 9개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주요 사업자 현황

구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한국	KT(80.5%) SKB(16.4%) LGU+(3.1%)	SKT(43.8%) KT(25.6%) LGU+(19.5%) MVNO(11.1%)	KT(41.3%) SKB(25.4%) LGU+(17.5%)
미국	Verizon(15.3%) AT&T(10.8%)	AT&T(38.0%) Verizon(34.1%) Sprint T-Mobile USA	Comcast(36.9%) AT&T(27.0%) Time Warner Cable(20.6%) Verizon(15.5%)
영국	BT(38%) Virgin Media(12%)	O2(31.7%) EE(31.3%) Vodafone(23.7%) Hutchison 3G(13.3%)	BT(31.8%) Sky UK(23.0%) Virgin Media(20.2%) TalkTalk(18.9%)
프랑스	Orange(78.1%) Numericable-SFR, Bouygues Telecom 등	Orange(34.2%) Numericable-SFT(27.0%) Bouygues Telecom(13.9%) Free(12.1%) MVNO(11.3%)	Orange(40.0%) Numericable-SFT(25.0%) Free(23.0%) Bouygues Telecom(9.0%)
일본	NTT KDDI Softbank	NTT DoCoMo(45.1%) KDDI(29.4%) Softbank(25.6%)	NTT 동/서(53.6%) KDDI Softbank(11.7%)
중국	China Unicom China Telecom	China Mobile(63%) China Unicom(22.2%) China Telecom(14.8%)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인도	BSNL(62.7%, 국영) MTNL(13.0%, 국영) Bharti Airtel(12.6%)	Bharti Airtel(24.6%) Vodafone(20.0%) Idea(17.2%) Reliance(9.0%)	Bharti Airtel(21.5%) BSNL(20.2%) Vodafone(18.9%) Idea(14.9%) Reliance(7.9%)
베트남	VNPT(76.5%, 국영) Viettel(21.5%)	Viettel(46.3%) MobiFone(30.7%)(VNPT에서 분리) Vinaphone(16.7%)(VNPT 자회사)	VNPT(60.7%, 국영) FPT(24.5%) Viettel(13.7%)
인도네시아	Telkom(33.7%, 국영) Indosat(CDMA 고정형 무선) Bakrie Telecom(CDMA 고정형 무선)	Telkomsel(44.3%, 국영 Telkom 자회사) Indosat(20.8%) XL Axiata(16.3%)	PT Indonusa Telemedia(Telkom 자회사) IM2(Indosat 자회사) XL Axiata(HSDPA 기반)
말레이시아	Telekom Malaysia(독점) TIME dot Com Maxis	Celcom(35.5%) Maxis(34.8%) DiGi(29.7%)(노르웨이 Telenor Group 49% 지분 소유)	Telekom Malaysia(유무선) Maxis(ADSL 기반)

(출처 : NIPA, '14.12월 기준, 단, 한국의 경우 미래부 통계에 따라 '16.10월 가입자수 현황 참조)

●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시장 경쟁 구조 결과 요약

- (유선통신) 단일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 50%를 초과하는 (지배적) 통신사업자 확인

- * 시장점유율 기준 50% 이상 1위 사업자 보유국: 한국, 프랑스, 일본(추정), 중국(추정),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 (이동통신) 최소 3개 사업자 경쟁 형태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MVNO를 포함한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증가 현상 발생
- * 시장점유율 기준 50% 이상 1위 사업자 보유국: 중국
- (브로드밴드) 유선통신과 동일하게 단일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 50%를 초과하는 통신사업자 확인
- * 시장점유율 기준 50% 이상 1위 사업자 보유국: 일본, 중국(추정), 베트남, 말레이시아(추정)

📖 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 매력도 평가

- (시장 매력도) 선진 그룹(미국, EU, 일본) 시장 매력도는 낮은 반면, 후진 그룹(중국, ASEAN 3국)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유선통신) 서비스 보급률 및 경쟁 수준에 상관없이 유무선 대체 현상 등에 따라 시장 축소가 예상되어 시장 매력도가 낮게 평가
 - (이동통신) 보급률, 경쟁 수준이 높지 않거나(중국), 보급률이 높더라도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경쟁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매력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브로드밴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경쟁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중국, 베트남) 시장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
- (대상국 그룹 분류) 시장 매력도 등을 고려 미국, EU(영국, 프랑스), 일본(그룹 1), 중국, 인도(그룹 2), ASEAN 3국(그룹 3)의 3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 (1차 분류) 선진 시장 그룹(미국, EU(영국, 프랑스), 일본)과 후발 시장 그룹으로 1차 분류
 - (2차 분류) 시장 규모, 브로드밴드 시장의 상대적 시장 매력도 등에 따라 후발 시장 그룹을 중국,인도와 ASEAN 3국으로 2차 분류

<표 4> 9개 대상국 통신시장별 시장 매력도 평가

그룹	국가	통신시장	보급률	성장 추이	경쟁 수준	시장 매력도
-	한국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그룹 1	미국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영국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프랑스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일본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그룹 2	중국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인도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그룹 3	베트남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말레이시아	유선통신	●	○	○	○
		이동통신	●	●	●	●
		브로드밴드	○	●	●	○

(범례: 상대적 평가 ● 높음 > ● 보통 > ○ 낮음)

III 신규 규범별 영향 분석

1. 재판매(TPP 13.9조)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지배적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 의무 직접 부과
 - 또한 일반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제공을 금지하지 않도록 부과
- (규범 내용) ① 일반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허용 ②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보장(요율 조건 부과) ③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대상 서비스 지정 가능 ④ 재판매 제공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판매 요청 가능
- (규범 내용) 기 체결 FTA 중 한-미 FTA 및 한-베트남 FTA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보장(단, 요율 조건 미부과) 의무 부과

<표 5> 재판매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규범	한-미/한-베트남 FTA
1. 통신사업자는 재판매 요청 시 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부과 보장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시 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부과 보장
2.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시 (1) 소매통신서비스를 합리적 요율로 재판매 허용 보장 (2) 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부과 보장	[한-미 FTA] * 한국과 미국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배제
3.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재판매 대상 서비스 결정 가능	
4.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대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재판매 제공 요청 허용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재판매 허가를 받으면 재판매 가능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해외통신사업자가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①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서비스 또는 ② 통신서비스 모집/중계 서비스(단순 재판매) 사업 진입
 - ※ 서비스 분류 근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CT 통계 분류체계
 - (①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Network Resale))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을 임차·이용하여 유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표 6>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세분류 정의 및 주요 사업자

세분류	세분류(영문)	정의	주요 사업자	
유선	유선전화	Wired Telephone Service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포함)	삼성SDS, 한화SNC, KT네트웍스
	인터넷 접속서비스	Internet Access Service	자체 교환서비스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삼성SDS, 가비아
	국제회선 재판매	International Call Resale	기간사업자의 국제 음성 또는 데이터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팩넷서비스코리아, 아이즈비전
무선	음성	Voice Resale	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MVNO가 MNO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음성부분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	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데이터	Data Resale	MVNO가 MNO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텔레매틱스, 모바일 뱅킹, 모바일 인터넷 등의 데이터 부분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	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차, 독립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단순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출처: KAIT ICT 통계분류체계)

- (② 통신서비스 모집/중개(Telecom. Brokerage)) 기간통신사업자 대신 유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다량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규모 통화시간 등을 구입, 이를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단순 재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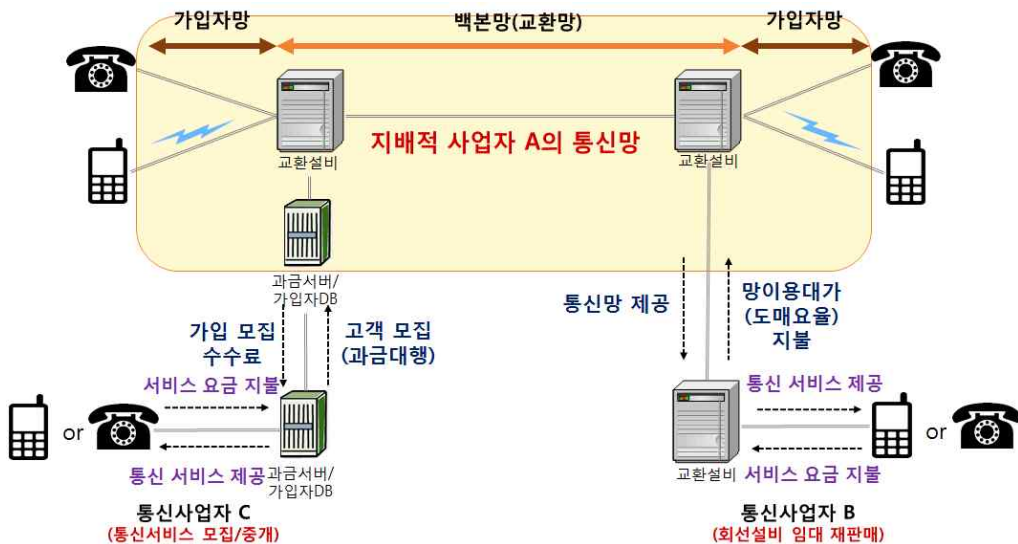
<표 7>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세분류 정의 및 주요 사업자

세분류	세분류(영문)	정의	주요 사업자	
유선 통신	재과금 서비스	Rebilling Service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 2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 1호 사업자의 다량이용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비티사우스코리아, 아이즈비전
	호 집중 서비스	Call Aggregating Service	여러 지역에 사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파워콜, 몬티스타텔레콤, 넥스텔레콤

세분류	세분류(영문)	정의	주요 사업자	
무선 통신	재과금 서비스	Rebilling Service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 2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 1호 사업자의 다량이용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	에넥스텔레콤, 씨앤엠브이엔오
	호 집중 서비스	Call Aggregating Service	여러 지역에 사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처음넷, 텔레센트르, 세중게임즈

- (유력 시나리오) 국내 별정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불특정 다수 가입자 모집이 어려움에 따라 단순 재판매보다 **국내 거주/위치하는 자국 소비자** 대상으로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그림 1] 통신사업자 B)” 사업 가능성 높음

* 다만, 국내 거주/위치하는 자국 소비자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단순재판매(“통신 서비스 모집/중개 서비스([그림 1] 통신사업자 C)”) 사업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재판매 서비스 형태 개념도

● (시장 진입 제약)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별정통신사업 등록 신청 가능

- 별정 사업자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 재정적 능력: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자본금 30억원 이상), 설비미보유 재판매 사업(자본금 3억원 이상)
 - 기술적 능력: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통신설비기능장 등 전문가 5인 이상), 설비미보유 재판매 사업(통신설비기능장 등 전문가 1인 이상)
 - 이용자 보호계획: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이용자 약관 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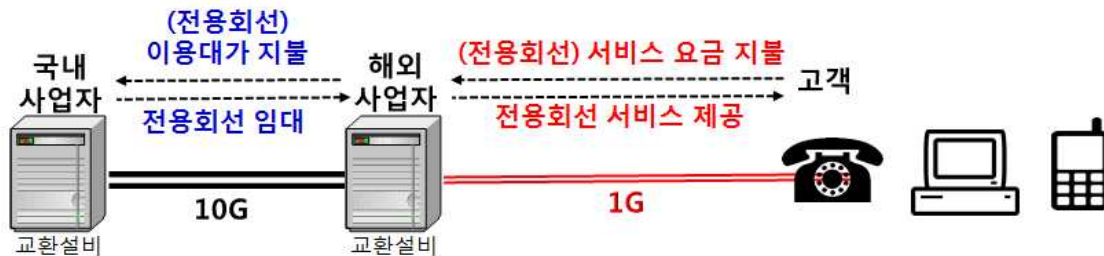
- (해외 사업자 진입 현황)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 (총 10개사) 중 BT, KDDI, 차이나텔레콤 등 3개사가 “통신 재판매업(한국 표준산업분류 61291)” 업종으로 분류

* Verizon, NTT, Telstra, 싱가포르텔레콤의 경우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한국표준산업 분류 61299)”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AT&T, Sprint, Quest Comm. 등 3개 사업자는 업종 미확인(출처: CRETOP)

※ 국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해외 통신사업자(총 10개사) : AT&T, Verizon, Sprint, Quest Comm. (이상 미국), NTT, KDDI (이상 일본), BT(영국), Telstra(호주), 싱가포르텔레콤(싱가포르), 차이나텔레콤(중국)

- 이 중 특정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업자로부터 국내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전용회선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

* [그림 2]는 가능한 “전용회선 재판매 서비스” 개념도이므로 실제 전용회선 재판매 서비스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 해외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재판매 서비스 개념도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통신사업자가 상대국 통신사업자 망(통신설비)을 전체 또는 일부 임차하여 통신 서비스 제공

- (유력 시나리오)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로컬 사업자와 동등 경쟁하는 소매 서비스 형태보다는 해외에 거주/위치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시장 진입 제약) 미국, EU(영국, 프랑스), 일본은 상업적 주재 형태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제약 요건이 없는 반면, 기타 국가는 “법인” 설립 및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설립요건 또는 외국인지분제한요건 추가 부과

<표 8> 9개 대상국 통신서비스별 시장 접근 제약 현황

구 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미국	제약 없음		
EU(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합작설립 및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50%)요건 부과	합작설립 및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49%)요건 부과	합작설립 및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50%)요건 부과
인도	- FIPB 승인 요구, - 허가의 수는 희소자원에 따라 서비스 별 건으로 제한 가능(서비스 지역별 2건), - 민간 사업자는 외국인 지분제한 (49%) -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장거리 서비스 제공 가능, - 음성전화서비스의 재판매는 불허 (다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공중전화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부여)		
베트남	외국인 출자 합자투자 법정자본의 65% 초과 불가		
인도네시아	합작 설립 및 외국인 지분 참여 (서비스별 상이, 최소 35%) 요건 부과	합작설립 및 외국인 지분제한 (40%) 요건 부과	
말레이시아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 취득 요구, 지분제한(49%) 요건 부과		

- (재판매 관련 규제: 유선) 영국, 프랑스는 유선 지배적 사업자에게 도매회선임대 (WLR) 의무를 부과(요금 규제 포함)하는 반면, 미국, 인도네시아는 규제 없이 상업적 계약에 의해 도매회선임대 제공

* 다만 현 도매회선임대 의무는 대부분 “동선” 제공을 대상으로 하며 “광케이블” 제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도매회선임대(Wholesale line rental, WLR):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유선통신 가입자망을 도매로 구입하여 자사 가입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유선전화 회선설비 재판매”에 해당되며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아 상업적 계약에 의해 도매회선임대 제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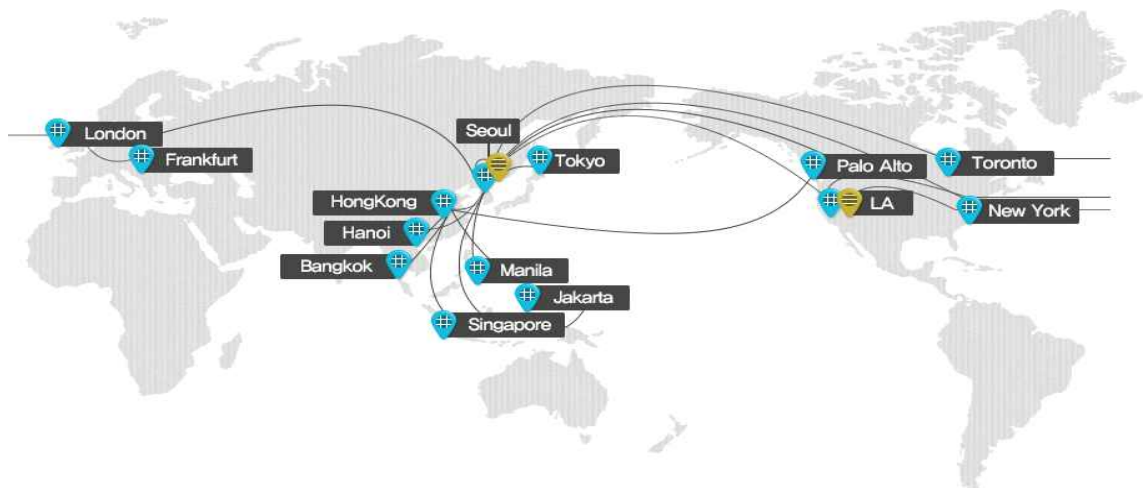
<표 9> 9개 대상국 유선 재판매(도매회선임대(WLR)) 규제 현황

구 분	규제 현황
미국	WLR 규제 없음
영국	지배적 사업자의 WLR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프랑스	지배적 사업자의 WLR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일본	-
중국	-
인도	WLR 서비스 없음
베트남	WLR 규제 없음
인도네시아	WLR 규제 없음
말레이시아	WLR 제공 의무 부여

(출처: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일본, 중국은 보고서내 관련 규제가 기술되지 않아 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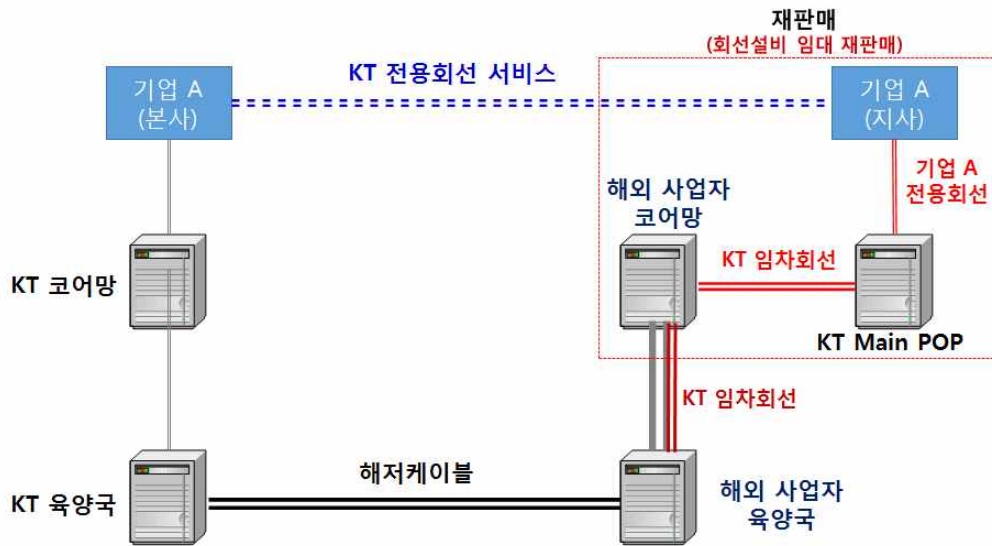
- (재판매 관련 규제: 이동)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MVNO를 허용하되 지배적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관련 제도가 없거나 관련 제도가 있더라도 MVNO 부재
- * MVNO 사업자 현황: 영국(28개), 프랑스(50개), 중국(42개), 말레이시아(4개), 미국 및 일본 역시 다수 MVNO 사업자 존재(출처: Inca Report, Budde.com Report)
- * 중국의 경우 비통신 기업(예: 알리바바)에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자사 핵심 사업 촉진 수단으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에 관한 규제가 없어 MVNO 사업자들이 중소 MNO 사업자 통신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 * 베트남의 경우 당초 다수 MVNO 사업자들이 있었으나 서비스 출시 실패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15년 말 기준 MVNO 사업자 미확인

● (국내 사업자 진출 현황) KT의 경우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에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또는 주요 거점(Main POP)을 구축하여 데이터회선 서비스 제공 중



[그림 3] KT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제공 현황(출처: KT 홈페이지)

- (KT 제공 서비스 형태) 국내에 진입한 KDDI와 유사하게 상대국 로컬 사업자에게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이 중 일부를 자사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형태 예상
- * 다만, 통신규범 내 “전용회선” 설비에 관한 규범이 별도 마련되어 있다면 전용회선의 임차 및 재판매의 경우에는 “재판매” 규범보다는 “전용회선” 규범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그림 4] KT 데이터 회선 서비스 개념도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신규규범 3항(당사국이 재판매 제공 대상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내에서는 “SKT의 2G/3G/4G 서비스 재판매 의무”만 부과되므로 해외 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를 추진할 경우에만 본 규범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3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란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셀룰러, IMT2000, LTE의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별표 1]의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 (이동통신 : 미국) 기체결 FTA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재판매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던 바, 미국 사업자가 MVNO 사업 추진 시 신규 규범 직접 적용

- * 국내 거주/위치하는 자국민 수요가 13만 8,660명 수준임에 따라 자국민 또는 자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MVNO 추진 가능성이 있으나, MVNO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에 따라 미국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MVNO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동통신 : 기타)** 기체결 FTA에 없는 신규 규범으로서 국내 진출 시 적용 가능하며 국내 거주/위치하는 자국민 수를 감안할 때 중국, 베트남 사업자의 MVNO 사업 추진 가능성이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 * 국내 거주/위치하는 자국민 수가 적더라도 향후 국내에 위치한 자국 기업 대상 통신 서비스의 하나로 기업용 MVNO 서비스 제공 출시 가능성 존재

<표 10> 9개 대상국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구 분	체류외국인(명)	구 분	체류외국인(명)
미국	138,660	중국	329,216
영국	7,275	인도	10,414
프랑스	5,343	베트남	136,758
일본	47,909	인도네시아	46,538
호주(추가)	12,303	말레이시아	7,698

(출처 : 통계청, '15년 기준)

- **(유선통신)** 신규규범 4항(재판매 제공 대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재판매 요청 허용)을 통해 대상국 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자(KT) 설비를 임차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통신 재판매 서비스 제공 가능
- * 예를 들어, 일본 NTT는 인도에 NTT Communications India를 설립(전국시외통신 사업자)하여 인도 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VPN,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제공 중
- * 다만, 국내에서 유선통신서비스가 “의무제공대상 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아 제공사업자(KT)에게 비차별 요건 이외에 추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1항)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통신규범에서의 “공중통신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가 없어 “상업적 계약”에 의한 재판매만 가능하므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 **(해외 진출)** 신규규범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을 합리적 요율로 제공받을 수 있어 잠재적 혜택 기대
- 해당 통신시장에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면(예: 미국) 2항 이하 신규규범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본 규범으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예를 들어, 미국은 모든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 체결 FTA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추가 효과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표 11> 9개 대상국별 통신시장 별 지배적 사업자 존재 여부

구 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지배적 사업자 有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배적 사업자 無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외 8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였으며, 필수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추가 확인 가능

- 지배적 사업자가 있더라도 당사국이 제공 의무 대상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어(3항)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 경우는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유선통신 : 미국)** 지배적 사업자가 없어 WLR 규제 또한 시행되지 않아 기 체결 FTA 대비 추가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 * 이에 미국에 거주/위치한 한국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통신(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국 통신사업자와의 상업적 계약에 의한 도매제공 이용 예상
- **(유선통신 : 영국, 프랑스)** 규범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사업자에게 WLR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제에 따라 회선설비 임차가 가능하므로 신규 규범에 의한 추가적 혜택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선통신 : 중국, 인도)**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나 WLR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통신사업자 진출 시 신규규범 적용이 가능하므로 잠재적 혜택 기대
- **(유선통신 : ASEAN 3국)**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WLR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 규범에 따라 진출 시 대상국 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제공 이용 가능
- **(이동통신)** 중국 이외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2항 이하 규범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규범에 따른 혜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다만 ASEAN 3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매력도가 높아 1항(일반 사업자의 재판매 허용)을 적용하여 상대국 시장에 MVNO 사업 진출 가능성 존재
- **(브로드밴드)** 중국, 베트남의 경우 시장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브로드밴드가 “공중통신서비스”에 해당될 경우 신규규범에 의한 혜택 기대
- * 이에 합작설립 및 외국인지분제한 요건이 부과되더라도 해당 통신시장에 진출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평가

● 재판매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12> 재판매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재판매	그룹 1 (미국, EU, 일본)	•지배적 사업자가 없거나 (미국), 당사국 내 규제가 이미 마련되어 규범에 따른 혜택 미미	•(유선) 본 규범에 의한 추가 효과가 없어 영향 미미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그룹 2 (중국, 인도)	•지배적 사업자가 있고, 당사국 내 규제가 없어 본 규범 적용에 따른 혜택 예상	•(이동) 자국민 수요가 충분한 대상국(중국, 베트남, 미국) 사업자의 MVNO 사업 추진 가능성 존재	•진출 없음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배적 사업자가 있고, 당사국 내 규제가 없어 본 규범 적용에 따른 혜택 예상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2.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TPP 13.12조)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지배적 사업자에게 전용회선 제공 의무 직접 부과
- (규범 내용) ①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제공 보장(요율 조건 부과) ② 통신 규제기관에 지배적 사업자가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 원가지향적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 부여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기 체결 FTA 중 한-미 및 한-베트남 FTA에서 전용회선 규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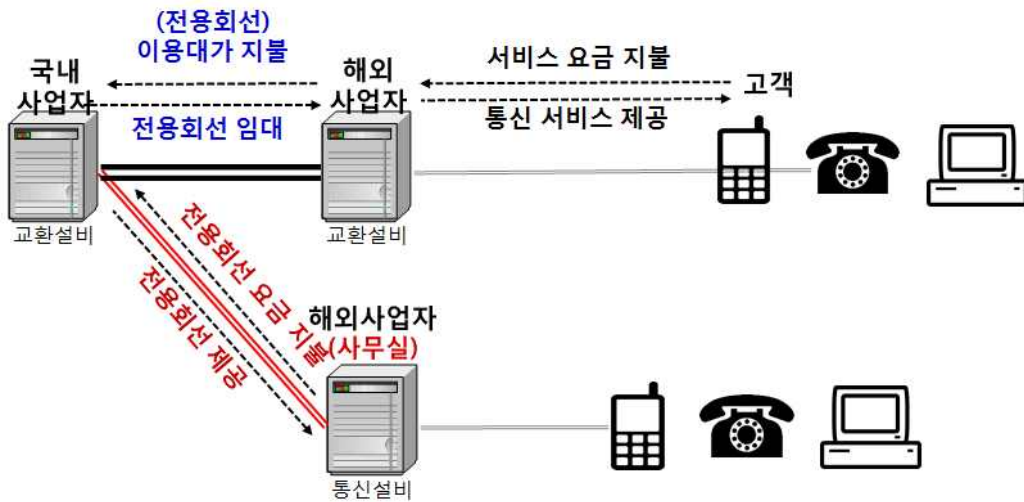
<표 13> 전용회선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규범	한-미/한-베트남 FTA
1. 지배적 사업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1) 합리적이고 (2)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보장 2. 지배적 사업자가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 권한을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	한-미 FTA 경우, 본 조항이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각주 포함 한-베트남 FTA 경우, 지배적 사업자 전용회선 공급 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 및 요율 제공 보장 * 한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 배제 및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 허용. 공중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① 해외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임차하거나 ② 서비스공급자(통신사업자 포함)가 소매 형태로 전용회선을 임차하는 경우로 구분 가능
- (통신사업자간 전용회선 제공)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사업자가 직접 회선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전용회선을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임차 가능
- * 예를 들어, 2G/3G 서비스 당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일부 구간(지역)에 대해 직접 망을 구축하지 않고 유선통신 사업자가 기 구축한 회선을 임차하는 사례 존재

- (소매 전용회선 제공) 일반 서비스공급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통신사업자 역시 “통신망 구축” 목적이 아닌 자사 사용을 목적으로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그림 5] 전용회선 제공/이용 시나리오 예시

- (시장 진입 제약)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로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획득이 필요한 반면, 소매 통신서비스로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제약 없음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정의) 1항 12호: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해외 사업자 진입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해외 통신사업자 중 다수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국내·국제전용회선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중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통신사업자의 국내·국제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 가능
 - 통신사업자가 아닌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 시 자사 목적에 따라 상대국 통신사업자로부터 국내·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가능
- (진입국 전용회선 관련 규제) 미국을 제외한 상대국 대부분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전용회선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요율 규제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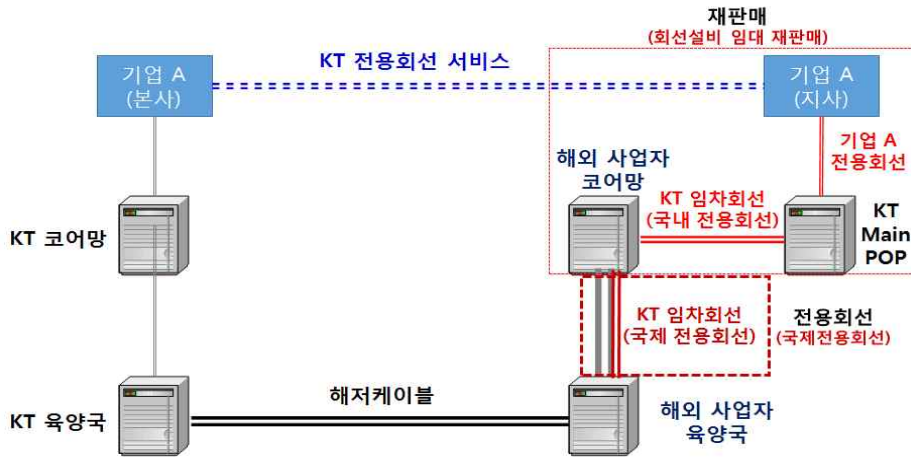
<표 14> 9개 대상국 전용회선(Leased Lines) 규제 현황

구분	규제 현황
미국	규제 없음
영국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프랑스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일본	상호접속 목적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중국	상호접속 목적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인도	국내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상한) 규제
베트남	규제 없음
인도네시아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말레이시아	국내전용회선 제공 의무 부여 및 도매요금 규제

(출처: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 (국내 사업자 진출 현황) KT의 경우 해외에 위치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데이터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국 로컬 사업자의 국제 또는 국내 전용회선을 임차할 것으로 예상

* [그림 6]은 가능한 “전용회선 임차” 개념도이므로 실제 전용회선 임차 및 서비스 제공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6] KT 데이터 회선 서비스 내 임차 “전용회선” 개념도

- 해외에 위치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중 국내 통신사업자(예: KT)로부터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필요에 따라 상대국 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 서비스공급자(통신사업자 포함)가 KT 전용회선을 제공받는데 본 규범 적용 가능

- 전용회선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이나, 현재 “전용회선 설비”를 포함한 “필수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 존재
- * 다만 엄밀하게 “전용회선 설비”가 “전용회선”이라는 특정 통신서비스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표현 수정 검토 필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 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지배적 사업자 용어정의(기체결 FTA)

(a) 필수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 전용회선 자체는 국내에서 “의무제공대상설비(필수설비)”로 지정되지 않아 **KT에게 제공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어서 해외 서비스 공급자(통신사업자 포함)의 이용 요청을 **KT가 거부할 유인이 낮음**
- ※ ‘14년 말 기준 전체 전용회선 시장에서 KT 시장점유율은 39.3% 수준이며, 국내전용회선 제공 사업자는 9개(인터넷전용회선 포함), 국제전용회선 제공 사업자는 7개로 확인(출처: KISDI, ‘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전용회선 이용대가가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이용약관상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형성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공급자(통신사업자 포함)가 KT에게 본 규범 적용을 강하게 요청할 유인 또한 낮음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20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 ③ 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 따라서 기 체결 FTA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규범이 해외 통신사업자 및 일반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 미국(및 호주) 사업자의 경우 기 체결 FTA와 동일함에 따라 신규규범 영향이 없으며, EU,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신규규범 적용 이전에 이미 국내 통신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을 제공받고 있어 추가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진출)** 신규규범을 통해 국내 서비스 공급자(통신사업자 포함)가 해외 진출 시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을 합리적 요율로 제공받을 수 있어 잠재적 혜택 기대
 - * 다만, 해당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면 본 규범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본 신규규범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높지 않을 수 있음(<표 11> 참조)
 - **(미국)** 기 체결 FTA 규범과 동일하여 신규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 * 미국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가 없고 전용회선에 대한 규제 또한 없어 미국 통신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에 의한 전용회선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영국, 프랑스)** 신규규범 적용과 상관없이 자국 지배적 사업자에게 전용회선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도매요율을 규제하고 있어 신규규범에 따른 혜택 미미
 - **(일본)** 현재 상호접속 목적에 한해 전용회선 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라 국내 서비스 공급자 및 통신사업자가 기타 목적으로 전용회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다만, 국내와 동일하게 전용회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중국, 인도)** 중국은 상호접속 목적에 한해 제공 의무를, 인도는 “여유용량”에 한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라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ASEAN 3국)** 인도네시아는 국내사업자(KT)가 이미 진출하여 상대국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지배적 사업자가 없어 신규규범 적용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예상. 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신규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전용회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책정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15>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책정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 범	구 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전용회선	그룹 1 (미국, EU, 일본)	•지배적 사업자가 없거나 (미국), 당사국 내 규제가 이미 마련(영국, 프랑스) 되어 규범에 따른 혜택 미미. 단 일본의 경우 신규 규범에 따라 추가 혜택 기대	•국내 전용회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에 따라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더라도 본 규범에 따른 영향 미미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시 전용회선 임차 예상

규 범	구 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이용 시 혜택 기대		•진출 없음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이용 시 혜택 기대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시 전용회선 임차 예상

3. 필수설비 접근(TPP 13.14조)

■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지배적 사업자에게 필수설비(전주, 관로, 도관, 설비포설권 등) 제공 의무 직접 부과
- (규범 내용) ①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전주, 관로, 도관, 설비포설권 및 기타 설비) 접근 제공(요율 조건 부과) ② 통신규제기관에 제공 대상 필수설비 지정 권한 부여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한-미 FTA의 경우 신규규범과 의무 부과 동일 (당사국의 설비 지정 권한 미기술)

<표 16> 필수설비 접근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한-미 FTA
1. 지배적 사업자가 전주, 관로, 도관, 설비포설권 혹은 기타 설비 등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선에서 (1) 시의적절하게 (2) 원가 지향적이며 (3) 합리적 (4)비차별적 그리고 (5) 투명한 조건으로 제공 보장 2. 당사국에 제공 설비 지정 권한 부여 (단, 유효 경쟁 달성 목적에 부합 여부와 설비의 대체성 및 기술 가능성 고려)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에 대해 합리적/비차별적/투명한 조건 및 요율 보장 * 한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 및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 배제 * 미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 배제 및 시골의 전화회사 및 통신 교환사업자 면제 가능

■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해외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KT)가 통제하고 있는 필수설비(의무제공대상설비) 접근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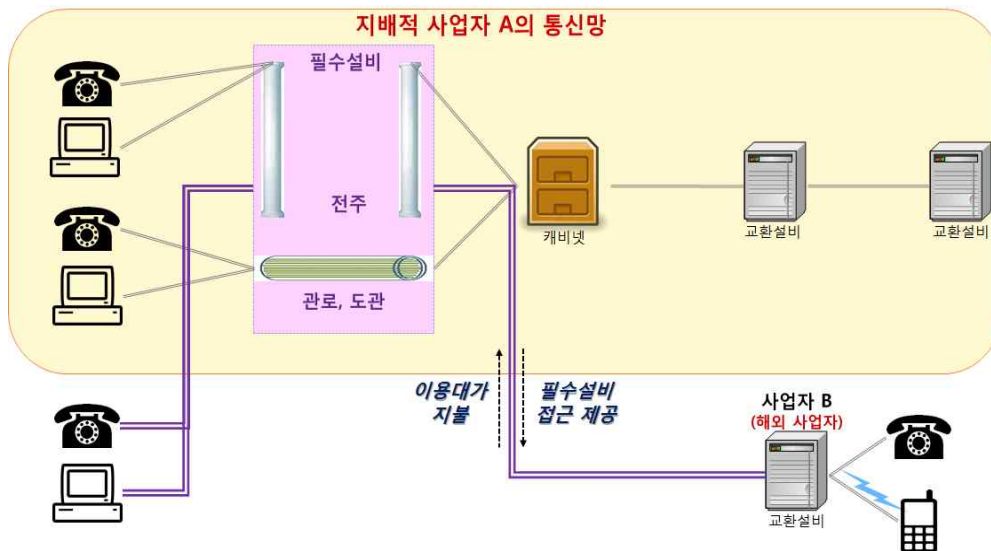
- * 국내의 경우 의무제공사업자(지배적 사업자)가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무제공 대상설비)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규범에 기술된 설비(설비포설권 제외)를 대부분 포함. 설비포설권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72조 토지등의 사용)을 통해 규제 중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14조(제공대상설비 등)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1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15조(의무제공대상설비)

- ① 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2.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전용회선 장비에 수용된 예비회선 포함)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
 3. 관로
 - 가.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
 - 나.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 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
 - 다. 관로의 제공가능 여부 판단은 별표1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
 5. 전주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그림 7] 필수설비(전주, 관로, 도관) 접근 제공 및 이용 예시

- 일정 수준의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설비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아 “별정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 요청 가능성 낮음

* 통신사업자가 대부분 특정 지역에 회선을 구축하여 자사 교환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주, 관로, 도관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 요청 가능성 높음

● (시장 진입 제약)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획득 필요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정의) 1항 12호: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해외 사업자 진입 현황)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 (총 10개사) 중 KT의 전주, 관로, 도관 이용 요청 사례 미확인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 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이용 가능

* 다만, 일정 수준의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필수설비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아, 통신망 구축 후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이용 가능성 증가 예상

● (진입국 필수설비 접근 관련 규제) 국가별 특성에 따라 물리적 접근 의무가 부과되는 설비가 상이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유선통신 전국망 구축이 저조, 이동통신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에 따라 국내와 다르게 “철탑”이 필수설비로 지정

<표 17> 9개 대상국 물리적 설비 접근(Physical Infrastructure Access) 규제 현황

구분	규제 현황
미국	관로 제공 의무 부여 (상업적)
영국	지배적 사업자(BT)의 전주, 관로 제공의무 부여 (basis of charges)
프랑스	지배적 사업자(Orange)의 전주, 관로 제공 의무 부여 및 요율 규제 (specific current costs)
일본	전주, 관로, 도관 및 기타설비 제공 의무 부여
중국	철탑, 전주 및 기타 설비 제공 의무 부여
인도	건물, 철탑, 관로포설권, 선로설비포설권 제공 의무 부여 및 요율 규제 (cost-based)
베트남	규제 없음
인도네시아	철탑 제공 의무 부여
말레이시아	철탑 (포설권 포함) 및 국사 제공 의무 부여

(출처 :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 **(국내 사업자 진출 현황)** KT의 경우 일부 진출국(방글라데시, 르완다)에서 통신망을 구축하여,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 설비 접근 가능성 존재
 - ※ KT 망구축 사업: 방글라데시(주요 3개도시 PSTN망 구축, 전국 주요 전화국사 인터넷망 구축), 르완다(전국 광케이블망 구축, LTE 백본망 구축)(출처: KT 홈페이지)
 - * 다만, 해당 진출국이 최빈국임에 따라 KT가 해당 진출국 정부 사업으로서 필수설비를 포함하여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상대국 통신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도매제공하는 형태일 가능성 존재

■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해외 통신사업자가 KT로부터 필수설비(의무제공대상설비)를 제공받는데 본 규범 적용 가능
 - 원칙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 요청이 가능하므로 해외 통신사업자가 설비 제공을 요청할 경우 K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 필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제공거부사유 등)

- ① 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단, 제공사업자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용자의 설비 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 다만 현재까지 해외 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이용 사례 부재를 필수설비 이용 필요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신규규범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요청 가능성은 향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해외통신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 FTA 규범에 상관없이 국내법에 따라 필수설비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요청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향후 해외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통신망을 일정 수준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면허를 획득할 경우 필수설비 접근 요청·이용 가능성 증가
- **(해외 진출)** 신규규범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필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혜택 기대

- * 다만 해당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면 본 규범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신규 규범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표 11> 참조)
- 특히 일부 상대국에서 “전주, 관로” 이외에 “철탑”이 필수 설비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규규범 내 “기타 구조물(other structures)”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유용할 것으로 판단
- 일정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한 경우에 한해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이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진출 시 통신망 구축에 대한 경제성 평가 선행 필요
- (미국) 기 FTA 규범과 차이가 없고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 없이 서비스 보급률 및 사업자간 경쟁도가 높아 통신망 구축 유인이 낮으므로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적인 혜택 미미
- (영국, 프랑스) 신규규범 적용과 상관없이 전주, 관로 접근이 가능하나 서비스 보급률 및 사업자간 경쟁도 측면에서 통신망 구축 유인이 낮아 신규 규범에 의한 추가 혜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본)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주, 관로, 도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일본 내 통신망을 구축할 유인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도) 서비스 보급률 및 사업자간 경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신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유인이 없지 않으나, 관련 제약 요건이 많아 통신망 구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ASEAN 3국) 중국, 인도와 동일하게 통신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유인이 없지 않으나 시장 접근 요건으로 인해 실제 통신망 구축 가능성 낮음

● 필수설비 접근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18> 필수설비 접근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 범	구 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필수설비 접근	그룹 1 (미국, EU, 일본)	•통신망 구축 유인이 없어 신규규범에 의한 상대국 필수설비 접근 요청 가능성 없음	•별정통신사업자의 필수 설비 이용 요청 가능성이 낮아 신규 규범에 따른 실제 영향 미미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컬 사업자 필수설비 이용 없음
	그룹 2 (중국, 인도)	•서비스 제약 요건으로 인한 통신망 구축 가능성 낮음		•진출 없음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서비스 제약 요건으로 인한 통신망 구축 가능성 낮음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컬 사업자 필수설비 이용 없음

4. 망 요소 세분화(TPP 13.10조)

규범 영향 검토

- (규범 성격)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요소에 대한 접근 보장 의무 부과
- (규범 내용) ① 지배적 사업자의 세분화된 망요소 제공 보장(요율 조건 부과)
② 당사국이 대상 망요소 및 공급자 결정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한-미 FTA의 경우 신규규범과 동일

<표 19> 망요소 세분화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규범	한-미 FTA
지배적 사업자가 망요소 세분화에 기초 (1) 원가 기반의 요율로 (2) 합리적 (3) 비차별적 그리고 (4)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하며 당사국이 망요소 및 공급자 결정	지배적 사업자가 망요소 세분화에 기초 (1) 원가 기반의 요율로 (2) 합리적 (3) 비차별적 그리고 (4)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 * 한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배제 및 공중통신 서비스의 별정 통신 사업자에 적용배제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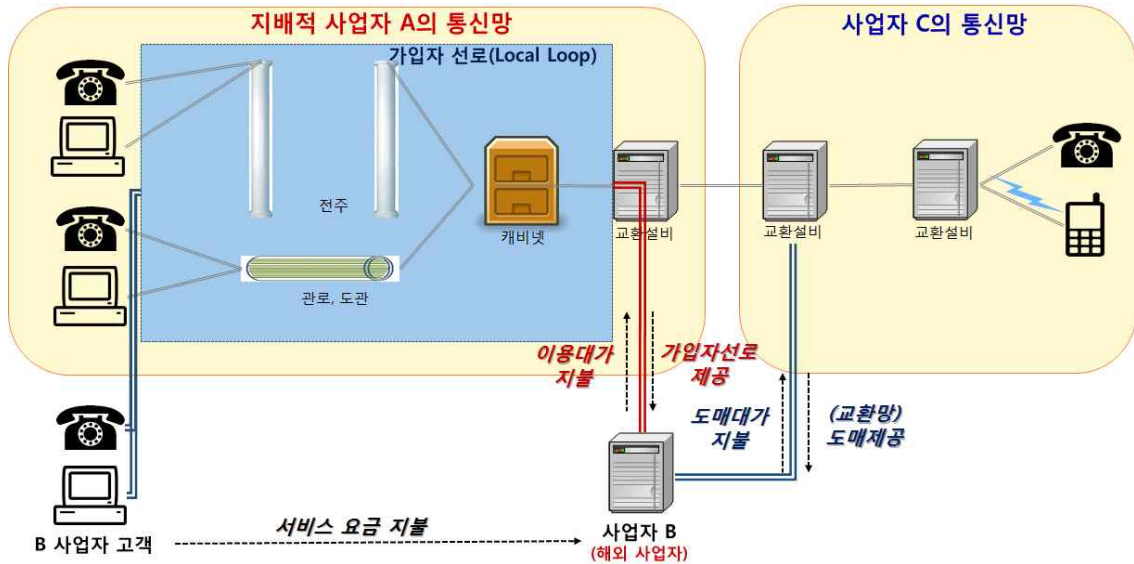
- (가능 시나리오) 해외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배적 사업자(KT)가 통제하고 있는 망요소 접근 요청 가능
- * “상호접속”, “전용회선”, “필수설비” 등 타 규범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설비를 제외할 경우 본 신규규범의 적용을 받는 세분화된 망요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선로(Local Loop)”를 의미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의무로 해석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 제3조(정의)

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과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 "별정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통신망 구축 없이 "교환망"과 "가입자선로"를 모두 임차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



[그림 8]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공 및 이용) 개념도

● (시장 진입 제약)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방식에 따라 제공·이용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어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획득 필요

<표 20>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방식별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구분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
동선일괄제공	가입자선로 보유 시내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용도로만 사용)
고주파회선 분리제공	가입자선로 보유 시내전화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용도로만 사용)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제공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 (해외 사업자 시장 진입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총 10개사) 중 KT의 가입자선로 이용 사업자 없음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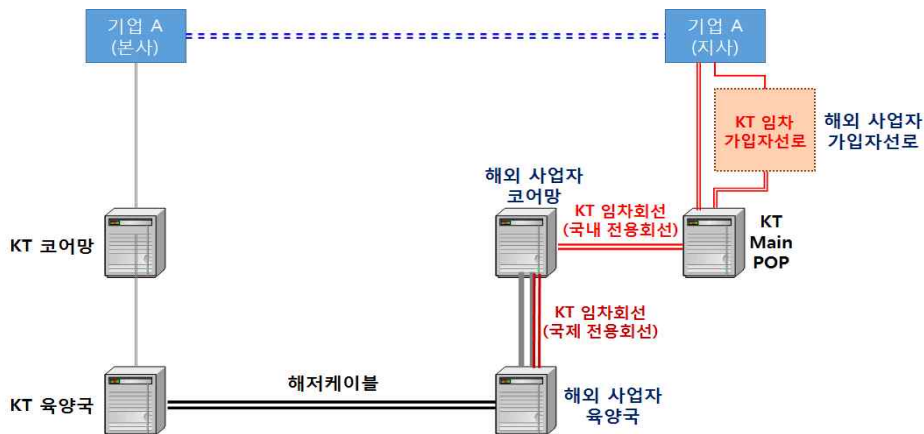
- (가능 시나리오) 국내 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국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 (진입국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규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는 LLU 제공 의무를 부과(대부분 광대역 의무 제외)하는 반면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관련 규제 부재

<표 21> 9개 대상국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규제 현황

구 분	규제 현황
미국	협대역 시장에 대해 LLU 제공 의무 부여 (광대역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
영국	지배적 사업자의 LLU(VULA 포함) 제공 의무 부여 및 요율 규제
프랑스	지배적 사업자의 LLU 제공 의무 부여 (광케이블 제외) 및 요율 규제(specific current costs)
일본	LLU 제공(동케이블, 광케이블 모두 포함) 의무 부여 및 요율 규제 (cost-based)
중국	LLU 규제 없음
인도	LLU 규제 없음
베트남	LLU 규제 없음
인도네시아	LLU 규제 없음
말레이시아	LLU 제공 의무 부여

(출처 :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 (국내 사업자 시장 진출 현황) KT의 경우 해외에 위치한 국내 기업 및 공공 기관에게 데이터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국 로컬 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성 존재



[그림 9] KT 데이터 회선 서비스 내 “가입자선로” 임차 개념도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해외 통신사업자가 KT로부터 가입자선로를 제공받는데 본 규범 적용 가능
 - “동선일괄제공” 및 “고주파회선 분리제공” 방식의 경우 제공사업자 “동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 이용 유인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초고속인터넷접속망”(디지털가입자망(xDSL) 또는 광동축 혼합망(HFC))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제공 목적으로 이용 요청이 가능하나, KT 외 **제공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 “상업적 계약” 형태로 제공사업자 선택 가능
 - *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사업자는 SO사업자를 포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KDDI는 CJ헬로비전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출처: CRETOP)
 - **(미국)** 기 체결 FTA에서 “별정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신규규범에 의해 “별정통신사업자”의 KT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 * 다만, 신규 규범이 아니더라도 국내 규제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상대국)** 신규규범에 상관없이 국내 규제에 따라 제공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규범에 따른 추가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진출)** 신규규범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혜택 기대
 - 다만, 해당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면 본 규범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본 규범 혜택은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예상(<표 11> 참조)
 - **(미국)** 기 체결 FTA 규범과 차이가 없고 “동선” LLU 제공 의무만 부과되고 있어 대부분 상대국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통해 “광케이블”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혜택 미미
 - **(영국, 프랑스)** 국내 규제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동선” LLU 제공 의무가 부과되므로 실제 신규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일본)** 신규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기대
 - **(중국, 인도)** LLU 규제가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혜택 기대

- (ASEAN 3국) 3국 모두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혜택 기대

● 망요소 세분화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22> 망요소 세분화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망요소 세분화	그룹 1 (미국, EU,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 규범 혜택 기대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신규 규범에 상관없이 “동선” 가입자선로 제공 의무가 부과되어 신규 규범 효과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가입자선로 중 “동선” 가입자선로 이용 유인이 낮고 “초고속인터넷망”의 경우 타 제공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의무 요청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로컬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그룹 2 (중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출 없음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로컬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5. 번호이동성 (TPP 13.5.4항)

📖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당사국에게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직접 부과
- (규범 내용) 당사국이 자국 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성을 품질 및 편의성에 침해 없이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보장
 - * 다만, TPP 협상 참여국별로 번호이동성에 제약이 있어 당사국에게 번호이동성 이행에 관한 유연성 확보를 각주(각주 6)를 통해 부여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기 체결 FTA 중 한-EU FTA, 한-미 FTA 및 한-베트남 FTA에서 당사국에게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과

<표 23> 번호이동성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규범	한-EU/한-미/한-베트남 FTA
<p>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품질 및 신뢰 침해 없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의 번호이동성 제공 보장</p> <p>*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번호이동성 의무 이행에 대한 특수성 인정(각주 6)</p>	<p>[한-EU FTA]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 제공을 보장</p> <p>[한-미 FTA]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 * 양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p> <p>[한-베트남 FTA]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번호이동성 제공을 보장 * 베트남의 경우,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 적용</p>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해외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PSTN), 인터넷전화(VoIP), 이동전화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 제공을 위하여 번호이동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 부여

※ 유선전화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 : 동일 통화권내 ① PSTN - PSTN ② PSTN → VoIP ③ VoIP(PSTN 번호) → PSTN/VoIP ④ VoIP - VoIP ⑤ VoIP → PSTN(단, 도입시기는 미래부장관이 별도 지정)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 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⑥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재부여사업자는 번호부여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부여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번호이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통화권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 ④ 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번호이동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⑥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의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시장 진입 제약)** 시내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획득 필요
- **(해외 사업자 진입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총 10개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현황 미확인
 - * 다만, BT, KDDI, 차이나텔레콤의 경우 통신 서비스 재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61291)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가능성 존재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출 하였을 경우 상대국 규제기관이 번호이동성 제공을 위한 의무 부과 가능
- **(진입국 번호이동성 관련 규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유선·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모두 제공되는 반면 인도, 말레이시아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만 제공(중국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범서비스 시행)

<표 24> 9개 대상국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규제 현황

구 분	규제 현황
미국	유/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영국	유/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프랑스	유/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일본	유/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중국	Tianjin과 Hainan 지역에 한해서 무선 번호이동성 시범적 규제
인도	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베트남	규제 없음('17.1월부터 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예정)
인도네시아	규제 없음
말레이시아	무선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 부여

(출처 :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 **(국내 사업자 시장 진출 현황)**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해외 통신사업자가 국내에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신규규범 적용
 - 국내에 이미 유선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 시행되고 있어 신규규범으로 인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통신사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VoIP → PSTN 전환 시 전화번호(070)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은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유형의 번호이동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 미미**
 - * 해당 유형의 번호이동이 시행될 경우 기존 시내전화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후발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혜택이 없으며, 정부 또한 VoIP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유형의 번호이동 시행 미결정
 - **(미국, 영국, 프랑스)** 기 FTA에서 “VoIP”를 번호이동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특정 유형(VoIP → PSTN)을 제외하고는 VoIP 번호이동 또한 제공되고 있어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상대국)** 신규규범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규제에 따라 번호이동을 제공하고 있어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해외 진출)** 신규 규범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하여 “전화서비스” 제공 시 번호이동을 통해 상대국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 다만 시내전화시장 축소, 이동전화시장 경쟁 심화 등 시장의 매력도에 따라 실제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규규범을 통한 “번호이동” 제공 보장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유선·이동 번호이동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 FTA에도 번호이동 제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규범의 추가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도)** 신규규범에 따라 (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 보장이 기대됨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사업에 진출할 경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ASEAN 3국)**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번호이동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규범에 따라 (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이 보장될 경우 국내 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진출 시 혜택 기대

● 번호이동성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25> 번호이동성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번호이동성	그룹 1 (미국, EU, 일본)	•유선/무선 번호이동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특정 유형(VoIP→PSTN)을 제외하고는 번호이동이 제공되고 있어 신규 규범이 미치는 영향 미미	•유선/이동전화 서비스 사업 진출 없음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으로(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이 이루어져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시 도움 기대		•진출 없음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규 규범으로(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이 이루어져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시 도움 기대		•유선/이동전화 서비스 사업 진출 없음

6. 분쟁해결 중 이의신청(TPP 13.21.1.(a)항)

📖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기업의 이의신청 보장
- (규범 내용) 당사국에게 타 당사국 기업(enterprise)이 분쟁발생 시 당사국 규제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 부과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기 체결 FTA 중 한-미 FTA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대상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제한. 한-미 FTA는 TPP와 동일

<표 26> 이의신청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iSA(RCEP) 규범	한-EU/한-미/한-중/한-베트남/한-인도 FTA
<p>타 당사국의 기업(enterprise)이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 보장</p>	<p>[한-미 FTA]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기업(enterprise)이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보장</p> <p>[한-EU/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FTA]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자간 분쟁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보장</p>

📖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해외 기업이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 통신규제기관(방통위)에 이의신청(재정) 가능
 - 국제통상 통신 규범이 대부분 “통신사업자” 의무 부과 조치임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또한 “통신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조항에 의해 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의 이의신청 가능성 존재
 - * 예를 들어 “전용회선” 규범은 전용회선 이용 대상을 “서비스 공급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용회선 제공사업자 - 이용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통신사업자 이외 전용회선 이용 “기업”이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능
- (시장 진입 제약) 통신규제기관(방통위)에 이의신청(재정) 대상으로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어 대상 사항인 경우라면 별도 요건 없음
 -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2.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90일 이내 체결
 3.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해외 사업자 시장 진입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총 10개사)를 포함한 해외 사업자의 이의신청 현황 미확인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 기업(통신사업자 포함)이 상대국 조치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상대국 규제기관 또는 기타 권한기관에 이의 신청 가능
 - **(진입국 이의신청 관련 규제)** 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관련 기관에 의해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인도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간 분쟁으로 제한

<표 27> 9개 대상국 이의신청 관련 규제 현황

구 분	규제 현황
미국	FCC 내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에서 시장 참여자, 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영국	Ofcom이 통신사업자간/통신사업자-이용자간 분쟁 발생시 개입
프랑스	ARCEP이 통신사업자간 분쟁 해결 처리
일본	총무성 및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이의신청 처리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에서 통신사업자간 분쟁 해결 처리
인도	규제기관(TRAI)로부터 분리된 Telecom Dispute Settlement and Appellate Tribunal에서 통신사업자간/통신사업자-이용자간 분쟁 해결 처리
베트남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에서 분쟁해결 처리
인도네시아	규제기관(BRTI)에서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 처리
말레이시아	규제기관(MCMC)에서 분쟁해결 처리

(출처 : OVUM 국가별 Country Regulation Overview 및 각국 규제기관 홈페이지)

- **(국내 사업자 시장 진출 현황)** 국내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해외 통신규제기관 이의신청 현황 미확인

📖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해외 기업(통신사업자 포함)이 국내 규제기관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규규범 적용
 - 다만 신규 규범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제도에서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어 **신규 규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해외 진출)** 신규 규범을 통해 통신사업자 이외에도 상대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통신 규제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 다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참여국의 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규범으로 관철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영국) 미국은 기 FTA와 동일함에 따라 신규규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역시 자국 규제기관이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어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일본) 신규규범에 따라 통신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혜택 기대
- (중국, 인도) 인도는 국내 기업의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만 처리하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아닌 국내 기업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추가 혜택 기대
- (ASEAN 3국) 신규 규범에 따라 통신사업자 이외 국내 기업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혜택 기대

● 이의신청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28> 이의신청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 범	구 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분쟁 해결 (이의 신청)	그룹 1 (미국, EU,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의 경우 신규 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프랑스, 일본의 경우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의신청 보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신규 규범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관련 현황 미확인
	그룹 2 (중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의신청 보장 가능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의신청 보장 가능 		

7. 규제접근 (TPP 13.3조)

■ 규범 개요

- (규범 성격) 시장의 가치 인식(recognize) 및 이에 의한 규제기관의 규제 적용면제 권한 부여 가능

- **(규범 내용)** ① 당사국의 통신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 역할의 중요성 인식 ② 당사국의 통신규범 이행 방식 결정 가능 ③ 당사국의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규제적용면제 가능
- **(기 체결 FTA 규범과 비교)** 기 체결 FTA 중 한-미 FTA에서 시장의 가치 인식 및 규제적용면제 가능성을 포함하는 규제접근 규범 포함

<표 29> 규제 접근 신규규범(TPP) 및 대상국 기 체결 FTA 규범

TPP 규범	한-미 FTA
1. 당사국은 경쟁 시장의 가치 인식. 필요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함을 인식. 시장별로 규제 필요성 및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 2. 당사국은 직접 규제를 하거나, 시장 역할에 의존하거나, 최종 이용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적절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 3. 당사국은 자국 법 한도 내에서 규제 적용 면제 가능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규제면제 적용.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 규제적용면제가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 규제적용면제 결정이 사법적 재심의 대상

📖 국내 시장 진입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해당 규범이 통신사업자의 규제적용면제 청원 등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규 규범이 해외 통신사업자의 규제적용면제 요청의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움
 - 당사국(규제기관)에게 규제적용면제 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당사국간 규제적용면제 요청의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해외 사업자 시장 진입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통신사업자(총 10개사)의 공식적/비공식적 규제적용면제 요청 미확인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 **(가능 시나리오)** 국내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규제기관에 특정 규제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신규 규범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진입국 이의신청 관련 규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규제적용면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1차 확인

※ 미국은 자국 통신법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규제기관(FCC)에게 규제적용 면제 의무를 부과하고, 통신사업자의 규제면제 청원을 보장

- (국내 사업자 시장 진출 현황) 국내 통신사업자가 진출국 규제기관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규제적용 면제를 요청한 현황 미확인

📖 규범 영향 검토

- (국내 진입) 해외 통신사업자가 규제면제를 위하여 신규 규범을 근거로 규제 면제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비록 신규 규범이 “규제적용면제”라는 방향성을 기술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으로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 규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국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고시에 의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신규 규범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해외 진출) 국내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규제기관에 신규규범을 근거로 규제 면제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규범에 따른 영향 미미
 - 미국은 규제면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국내 통신사업자가 규제면제를 청원할 수 있으나 기 FTA에서 해당 내용이 규범화되어 있어 신규 규범 추가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이의신청 규범 영향 검토 : 요약

<표 30> 이의신청 신규규범 영향 검토: 요약

규 범	구 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규제 접근	그룹 1 (미국, EU, 일본)	•신규 규범을 근거로 규제 면제 청원이 어려우므로 신규 규범에 따른 영향 미미	•이행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신규 규범이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규제면제 요청 현황 미확인
	그룹 2 (중국, 인도)			
	그룹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IV 결론 및 시사점

통신 서비스 신규 규범 영향 검토 요약

● 재판매 및 전용회선

- (국내 시장) 신규규범 적용 대상 국내 시장의 경쟁 수준이 충분히 높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해외 사업자 진입 가능성을 포함)이 높지 않음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의 경우 신규규범 수용을 위한 자국 법규제가 충분치 않고 시장 매력도 역시 일부 확인되어 진출 시 신규규범에 따른 혜택 기대

● 필수설비 접근 및 망요소 세분화

- (국내 시장) 해외 사업자의 국내 사업자 필수설비 및 가입자선로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해외 사업자 진입 가능성 포함) 미미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의 경우 진출 시 필수설비 이용 가능성은 낮으나 신규 규범에 따른 가입자선로 사용 기회 확대에 따른 혜택 기대

● 번호이동성

- (국내 시장) 특정유형(VoIP→PSTN)의 번호이동 요청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그 외 번호이동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신규규범에 의한 영향 미미
- (해외 진출) 중국, 인도, ASEAN 3국 진출 시 이동전화 번호이동 보장으로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가능성 증가 기대

● 이의신청 및 규제 접근

- (국내 시장) 이의신청은 국내에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규제면제는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규범에 의한 영향 높지 않음
- (해외 진출) 일부 시장(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규제면제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영향 미미

시사점

- 신규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규 통신규범이 중국, 인도, ASEAN 3국을 포함한 진행 협상 참여 예상국의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유도,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제약 조건 해소 기대
 - 재판매, 전용회선, 가입자선로 규범 등은 해외 시장에 통신망 구축 없이 통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예: 클라우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규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제통상규범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통신규범이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향후 진행·예상되는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필요

<표 31> 신규규범 영향 검토: 전체 요약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재판매	그룹 1 (미국, EU, 일본)	•지배적 사업자가 없거나 (미국), 당사국 내 규제가 이미 마련되어 규범에 따른 혜택 미미	•(유선) 본 규범에 의한 추가 효과가 없어 영향 미미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그룹 2 (중국, 인도)	•지배적 사업자가 있고, 당사국 내 규제가 없어 본 규범 적용에 따른 혜택 예상	•(이동) 자국민 수요가 충분한 대상국(중국, 베트남, 미국) 사업자의 MVNO 사업 추진 가능성 존재	•진출 없음
	그룹 3 (ASEAN 3국)	•지배적 사업자가 있고, 당사국 내 규제가 없어 본 규범 적용에 따른 혜택 예상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전용회선	그룹 1 (미국, EU, 일본)	•지배적 사업자가 없거나 (미국), 당사국 내 규제가 이미 마련(영국, 프랑스) 되어 규범에 따른 혜택 미미. 단 일본의 경우 신규 규범에 따라 추가 혜택 기대	•국내 전용회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에 따라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더라도 본 규범에 따른 영향 미미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시 전용회선 임차 예상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이용 시 혜택 기대		•진출 없음

구분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필수설비 접근	그룹 3 (ASEAN 3국)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이용 시 혜택 기대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출 시 전용회선 임차 예상
	그룹 1 (미국, EU, 일본)	•통신망 구축 유인이 없어 신규규범에 의한 상대국 필수설비 접근 요청 가능성 없음	•별정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이용 요청 가능성이 낮아 신규 규범에 따른 실제 영향 미미 * 국내 필수설비(=의무제공 대상설비): 가입자구간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컬 사업자 필수설비 이용 없음
	그룹 2 (중국, 인도)	•서비스 제약 요건으로 인한 통신망 구축 가능성 낮음	* 국내 필수설비(=의무제공 대상설비): 가입자구간 동선/광케이블 일부, 관로, 전주, 국사상면	•진출 없음
망요소 세분화	그룹 3 (ASEAN 3국)	•서비스 제약 요건으로 인한 통신망 구축 가능성 낮음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컬 사업자 필수설비 이용 없음
	그룹 1 (미국, EU, 일본)	•일본은“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규범 혜택 기대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신규 규범에 상관없이 “동선” 가입자선로 제공 의무가 부과되어 신규 규범 효과 낮음	•KT 가입자선로 중 “동선” 가입자선로 이용 유인이 낮고“초고속인터넷망”의 경우 타 제공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의무 요청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로컬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진출 없음
번호 이동성	그룹 3 (ASEAN 3국)	•신규 규범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데이터 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로컬 사업자 가입자선로 이용 가능
	그룹 1 (미국, EU, 일본)	•유선/무선 번호이동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신규 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유선/이동전화 서비스 사업 진출 없음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으로(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이 이루어져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시 도움 기대	•특정 유형(VoIP-PSIN)을 제외하고는 번호이동이 제공되고 있어 신규 규범이 미치는 영향 미미	•진출 없음
분쟁 해결 (이의)	그룹 3 (ASEAN 3국)	•신규 규범으로(적어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공이 이루어져 상대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시 도움 기대		•유선/이동전화 서비스 사업 진출 없음
	그룹 1 (미국, EU,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신규 규범에 따른 추가 혜택 미미	•이의신청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신규 규범에 따른 영향이	•분쟁 관련 현황 미확인

규범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내 업계 동향
신청)		•프랑스, 일본의 경우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 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 의신청 보장 가능	없을 것으로 예상	•분쟁 관련 현황 미확인
	그룹 2 (중국, 인도)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 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 의신청 보장 가능		
	그룹 3 (ASEAN 3국)	•신규 규범에 의해 통신 사업자 이외 기업의 이 의신청 보장 가능		
규제 접근	그룹 1 (미국, EU, 일본)	•신규 규범을 근거로 규 제 면제 청원이 어려우 므로 신규 규범에 따른 영향 미미	•이행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신규 규범이 미치 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규제면제 요청 현황 미 확인
	그룹 2 (중국, 인도)			
	그룹 3 (ASEAN 3국)			

[별첨] 분석 조항별 기 체결 FTA 규범 비교

1. 재판매 (Resale)

TPP	한-EU FTA	한-미 FTA (제14.6조)	한-중 FTA
1. 통신사업자는 재판매 요청 시 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부과 보장 2.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시 (1) 소매통신서비스를 합리적 요율로 재판매 허용 보장 (2) 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부과 보장 3.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재판매 대상 서비스 결정 가능 4.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대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재판매 제공 요청 허용	재판매 조항 미포함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배제)	재판매 조항 미포함
한-베트남 FTA (부속서 8-나 8조)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베트남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재판매 허가를 받으면 재판매 가능)	재판매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재판매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재판매 조항 미포함

2.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Provisioning and Pricing of Leased Circuits Services)

TPP	한-EU FTA	한-미 FTA (제14.9조)	한-중 FTA
<p>1. 지배적 사업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1) 합리적이고 (2)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보장</p> <p>2. 지배적 사업자가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 권한을 통신규제기관에 부여</p>	<p>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조항 미포함</p>	<p>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p> <p>2.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 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한다.</p>	<p>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조항 미포함</p>
한-베트남 FTA (부속서 8-나 7조)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p>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 공급 및 가격 책정 조항 미포함</p>

3. 필수설비 접근 (Access to Essential Facilities)

TPP	한-EU FTA	한-미 FTA (제14.11조)	한-중 FTA
<p>1. 지배적 사업자가 전주, 관로, 도관, 설비포설권 혹은 기타 설비 등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선에서 (1) 시의적절하게 (2) 원가 지향적이며 (3) 합리적 (4)비차별적 그리고 (5) 투명한 조건으로 제공 보장</p> <p>2. 당사국에 제공 설비 지정 권한 부여 (단, 유효경쟁 달성 목적에 부합 여부와 설비의 대체성 및 기술 가능성 고려)</p>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p>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p>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필수설비 접근 조항 미포함

4. 망요소 세분화 (Unbundling of Network Elements)

TPP	한-EU FTA	한-미 FTA (제14.11조)	한-중 FTA
<p>지배적 사업자가 망요소 세분화에 기초 (1) 원가 기반의 요율로 (2) 합리적 (3) 비차별적 그리고 (4)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 권한을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하며 당사국이 망요소 및 공급자 결정</p>	<p>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p>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 기관에게 부여한다.</p> <p>(한국의 경우,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배제 및 공중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배제)</p>	<p>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p>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p>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망요소 세분화 조항 미포함</p>

5. 번호이동성 (Number Portability)

TPP	한-EU FTA(제7.32조)	한-미 FTA (제14.3조)	한-중 FTA
<p>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품질 및 신뢰 침해 없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의 번호 이동성 제공 보장</p> <p>*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번호이동성 의무 이행에 대한 특수성 인정(각주 6)</p>	<p>각 당사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p>	<p>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각주: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번호이동성 조항 미포함</p>
한-베트남 FTA (부속서 8-나 9조)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p>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p> <p>(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p>	<p>번호이동성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번호이동성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번호이동성 조항 미포함</p>

6. 분쟁해결 (Resolution of Disputes) - 이의신청 보장

TPP	한-EU FTA(제7.36조)	한-미 FTA (제14.19조)	한-중 FTA
타 당사국 기업 (enterprise) 이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 보장	<p>1.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p> <p>가. 서비스 공급자는 이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자의 규제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1. 1) 기업은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 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p>
한-베트남 FTA (부속서 8-나 13조)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p>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분쟁해결을 위한 이의신청 조항 미포함</p>	<p>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분쟁해결을 위한 이의신청 조항 미포함</p>

7. 규제 접근 (Approach to Regulation)

TPP	한-EU FTA	한-미 FTA (제14.22조)	한-중 FTA
<p>1. 당사국은 경쟁 시장의 가치 인식. 필요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함을 인식. 시장별로 규제 필요성 및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p> <p>2. 당사국은 직접 규제를 하거나, 시장 역할에 의존하거나, 최종 이용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적절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p> <p>3. 당사국은 자국 법 한도 내에서 규제 적용 면제 가능</p>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p>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공중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자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면제할 수 있다.</p> <p>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고,</p> <p>나.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리고</p> <p>다. 규제적용 면제가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한다는 것</p>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규제적용 면제 결정이 제14.19조 다호에 따른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p>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말레이시아)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 규제 접근 조항 미포함



저자소개

이 형 직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hyeongjikleee@etri.re.kr Tel. 042-860-5972

김 지 은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jekim0104@etri.re.kr Tel. 042-860-1891

안 유 현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ayh60140@etri.re.kr Tel. 042-860-1292

국제통상 신규 통신규범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PP 통신 협정문 중심으로 -

발 행 인 : 한 성 수

발 행 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발 행 일 : 2016년 12월 31일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 래 전 략 연 구 소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전화 : (042) 860-3874, 팩스 : (042) 860-6504

* 주의 :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